

## 1. 주요 심의, 의결 및 자문기구

기구명	기능	구성	주관부서
평 의 원 회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의장, 부의장 등 50~100인 (총장 위촉 학외 평의원의 수 1/4 이내)	기 획 실 (평의원회)
학 장 회	대학(원)·학부·학과·전공 및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총장, 부총장, 학(원)장, 기초 교육원장, 처·실국장, 중앙 도서관장 등 31인	총 무 과
기 획 위 원 회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중·장기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전반사항	부총장, 처·실·국장, 기획부실장 등 28인 이내	기 획 실
재 정 위 원 회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재정운용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사항 관장	부총장, 기획실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기 획부실장 등 15인	기 획 실
대 학 원 위 원 회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 생정원에 관한 사항 등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대학원장, 학(원)장, 처·실 장 등 25인	대 학 원
대 학 인 사 위 원 회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교무처장, 학(원)장, 기초교 육원장, 처·실장 등 33인	교 무 과
기 초 교 육 위 원 회	기초교양교육 정책과 관련된 발전계획, 교양 교과과정의 제정·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기타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부총장, 기초교육원 원장, 기 초교육원 부원장, 교무부처 장 등 15인	기초교육원
학 사 운 영 위 원 회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연구·심의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입학 관리본부장, 기초교육원부원 장, 교무부학(원)장 등 24인	교 무 과
연 구 위 원 회	학술연구, 연구비 등 학술연구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 심의	연구처장, 교무처장, 기획실 장 등 16인	연구진흥과
정 보 화 위 원 회	대학정보화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심의	부총장, 처·실국장, 정보화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등 19인	정보화본부
연 구 감 사 위 원 회	연구비의 관리·지출에 관한 회계검사 및 연구관련 직무 감찰 등 수행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등 9인	연구진흥과
연 구 진 실 성 위 원 회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연구부 정·부적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실시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등 9인	연구지원과
생명윤리심의 위 원 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 적 타당성 심의 등	위원장 등 5인 이상 25인 이내, 외부인사 필수	연구지원과

## 2. 기관별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 행정관(대학본부)

- 총장실  
전화: 880-5001~3      Fax : 889-7515
- 부총장실  
전화: 880-5004~5      Fax : 879-2374
- 대학원장실  
전화: 880-5007      Fax : 889-7515
- 교무처장  
전화: 880-5008      Fax : 873-4987
- 부처장  
전화: 880-5017      Fax : 873-4987
- 교무과  
전화: 880-5023~5      Fax : 889-7528
- 학사과  
전화: 880-5042~3, 5032~5  
Fax : (학적) 874-8965 (수업) 877-1469
- 학생처장  
전화: 880-5010      Fax : 876-6268
- 부처장  
전화: 880-5011      Fax : 876-6268
- 학생과  
전화: 880-5050~2      Fax : 886-6121  
880-5060~2
- 복지과  
전화: 880-5072, 5078~9  
Fax : 880-5074, 888-9671
- 연구처장  
전화: 880-5016      Fax : 878-0100
- 부처장  
전화: 880-1471      Fax : 878-0100
- 연구진흥과  
전화: 880-5163      Fax : 885-4482
- 연구지원과  
전화: 880-5167      Fax : 873-0002  
<http://research.snu.ac.kr>
- 기획실장  
전화: 880-5012      Fax : 889-7615
- 기획부실장  
전화 : 880-1472      Fax : 889-7615
- 기획담당관  
전화: 880-5081~4      Fax : 889-7489
- 사무국장  
전화: 880-5013      Fax : 889-7516
- 총무과  
전화: 880-5091~3, 5096~8, 5102  
Fax : 885-5272
- 재무과  
전화: 880-5105~7, 880-5110~5113, 5117,  
5120, 5121  
Fax : 872-1793
- 예산담당관  
전화: 880-5125~8      Fax : 889-7613
- 시설관리국장  
전화: 880-5014      Fax : 889-7516
- 관리과  
전화: 880-5131~2, 5135      Fax : 880-8590
- 시설과  
전화: 880-5142, 5145, 5147, 5149, 5674  
Fax : 889-7197
- 기술과  
전화: 880-5141, 5143, 5146, 5148  
Fax : 889-7617

## 지 원 시 설

- 입학관리본부  
전화: 880-5009 Fax : 873-5009
- 입학관리과  
전화: 880-6971~7 Fax : 880-6996
- 대외협력본부  
전화: 880-5018 Fax : 889-7615
- 대외협력팀  
전화: 880-8633~7 Fax : 880-8632  
<http://oia.snu.ac.kr>
- 정보화본부  
전화: 880-1371 Fax : 876-5019
- 정보화기획팀  
전화: 880-5018 Fax : 876-5019  
<http://it4u.snu.ac.kr>
- 중앙전산원  
전화: 880-5353, 8282 Fax : 887-0130  
<http://it4u.snu.ac.kr>
- 중앙도서관
  - 관장실  
전화: 880-5280 Fax : 877-5636
  - 수서정리과  
전화: 880-5285 Fax : 871-2972
  - 정보관리과  
전화: 880-8784 Fax : 878-2730
  - 행정지원팀  
전화: 880-5297 Fax : 872-1797  
<http://library.snu.ac.kr>
- 기초교육원
  - 원장실  
전화: 880-6720,9345,873-2703 Fax : 880-5673

- 부원장실  
전화: 873-2703,880-5414 Fax : 880-5673
- 행정실  
전화: 880-5683,5690,5648 Fax : 880-5673  
<http://liberaledu.snu.ac.kr>
- 사회봉사실  
전화: 880-4007 Fax: 880-5415

## 대 학

### 인 문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6005~6 Fax: 880-8815  
(교학) 880-6007~10 Fax: 876-8605  
<http://www.snu-humanities.net>
- 국어국문학과  
전화: 880-6031 Fax : 878-1246  
<http://plaza1.snu.ac.kr/~korean>
- 중어중문학과  
전화: 880-6064 Fax : 885-9972  
<http://plaza1.snu.ac.kr/~snucll>
- 영어영문학과  
전화: 880-6078 Fax : 887-7850  
<http://plaza1.snu.ac.kr/~dell>
- 불어불문학과  
전화: 880-6114 Fax : 887-2493  
<http://france.snu.ac.kr>
- 독어독문학과  
전화: 880-6130 Fax : 872-1467  
<http://german.snu.ac.kr>

- 노어노문학과  
전화: 880-6150      Fax : 871-6128  
<http://snurussia.org>
- 서어서문학과  
전화: 880-6156      Fax : 882-6508  
<http://spanish.snu.ac.kr>
- 언어학과  
전화: 880-6164      Fax : 882-2451  
<http://plaza.snu.ac.kr/~linguist>
- 국사학과  
전화: 880-6175      Fax : 871-3526  
<http://plaza1.snu.ac.kr/~historia>
- 동양사학과  
전화: 880-6190      Fax : 888-7158  
<http://plaza.snu.ac.kr/~history>
- 서양사학과  
전화: 880-6200      Fax : 875-7383  
<http://plaza1.snu.ac.kr/~whisory>
- 고고미술사학과  
전화: 880-6210      Fax : 872-5415  
<http://www.archaeology-arthistory.or.kr>
- 철학과  
전화: 880-6218      Fax : 874-0126  
<http://phil.snu.ac.kr/>
- 종교학과  
전화: 880-6237      Fax : 877-6237  
<http://plaza1.snu.ac.kr/~religion>
- 미학과  
전화: 880-8526      Fax : 877-6340  
<http://plaza.snu.ac.kr/~meehak>
-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전화 : 880-6026  
<http://plaza.snu.ac.kr/~hermes>

-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전화 : 880-6174      Fax : 886-9604  
<http://cogsci.snu.ac.kr/>
-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전화 : 880-6849      Fax : 880-6849  
<http://plaza.snu.ac.kr/~complit>
-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전화 : 880-5682      Fax : 871-3526  
<http://archivist.snu.ac.kr/>
-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전화 : 880-1398      Fax : 887-1398  
<http://snupa.snu.ac.kr>

**사회과학대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6304~5  
          (교무) 880-6306~7  
          (학생) 880-6308~9  
Fax: 871-0971  
<http://social.snu.ac.kr>
- 정치학과  
전화: 880-6330~1      Fax : 887-4375  
<http://pol.snu.ac.kr>
- 외교학과  
전화: 880-6346-7      Fax : 886-1402  
<http://plaza.snu.ac.kr/~inter>
- 경제학부  
전화: 880-6359~61      Fax : 886-4231  
<http://econ.snu.ac.kr>
- 사회학과  
전화: 880-6401~2      Fax : 873-3799  
<http://sociology.snu.ac.kr>

- 인류학과  
전화: 880-6418~9 Fax : 878-8621  
<http://www.anthropology.or.kr>
- 심리학과  
전화: 880-6429, 6441 Fax : 880-6428  
<http://psych.snu.ac.kr/>
- 지리학과  
전화: 880-6444~5 Fax : 876-9498  
<http://www.geog.snu.ac.kr>
- 사회복지학과  
전화: 880-6456~7 Fax : 888-6981  
<http://www.snuwelfare.or.kr>
- 언론정보학과  
전화: 880-6466~7 Fax : 885-8418  
<http://communication.snu.ac.kr>
-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화 : 880-8889 Fax : 880-8888  
<http://gender.snu.ac.kr>
-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전화 : 880-9049 Fax : 884-7455  
<http://itct.snu.ac.kr>
- 사회과학대학 도서관  
전화: 880-8248 Fax : 889-0265  
<http://sociallib.snu.ac.kr>

**자연과학대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6504~5, 6508  
(교학) 880-6506~7, 6509, 8128  
(기획) 880-8126  
(연구) 880-6522, 6513  
Fax : (교무·학생) 876-4117  
(서무) 889-6522 (연구) 880-6513  
<http://cns.snu.ac.kr>

- 의예과  
전화: 880-6758~9 Fax : 886-6758  
<http://plaza.snu.ac.kr/~premed>
- 수의예과  
전화: 880-6758~9 Fax : 886-6758  
<http://plaza.snu.ac.kr/~premed>
- 수리과학부  
전화: 880-6530~1 Fax: 887-4694  
<http://www.math.snu.ac.kr>
- 통계학과  
전화: 880-6565~6 Fax: 883-6144  
<http://stats.snu.ac.kr>
- 물리·천문학부  
(물리전공)전화: 880-6587~8 Fax: 884-3002  
<http://physics.snu.ac.kr>  
(천문전공)전화: 880-6621,8159 Fax: 887-1435  
<http://astro.snu.ac.kr>
- 화학부  
전화: 880-6633~5 Fax: 889-1568  
<http://chem.snu.ac.kr>
- 생명과학부  
전화: 880-6698~9 Fax: 872-1993  
<http://biosci.snu.ac.kr>
- 지구환경과학부  
전화: 880-6727, 6713 Fax : 871-3269  
<http://sees.snu.ac.kr>
-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전화: 880-6759 Fax : 886-6758  
<http://phps.snu.ac.kr>
- 협동과정 유전공학 전공  
전화: 880-4017 Fax : 875-1157  
<http://ipge.snu.ac.kr>

- 협동과정 뇌과학 전공  
전화: 880-6694, 6690 Fax : 872-1993  
<http://plaza.snu.ac.kr/~neurosci>
- 협동과정 나노과학기술 전공  
전화: 880-1383 Fax : 876-3973  
<http://www.iview21.com/snu/>
- 협동과정 생물정보학 전공  
전화: 880-9023 Fax : 888-9623  
<http://ipbi.snu.ac.kr/>
- 협동과정 계산과학 전공  
전화: 880-9002 Fax : 885-7357  
<http://cst.snu.ac.kr/>

### 간 호 대 학

- 행정실  
전화 : (사무·연구) 740-8806, 8808  
(교무·학생) 740-8804, 8807, 8461  
Fax : 766-1852  
E-mail: [nursing@snu.ac.kr](mailto:nursing@snu.ac.kr)  
<http://nursing.snu.ac.kr>

### 경 영 대 학

- 행정실  
전화: (직통) 878-0101  
(사무) 880-6905, 6859  
(교학) 880-6906~8, 6919  
Fax : 884-0408
- 경영학과  
전화: 880-6906~7  
<http://cba.snu.ac.kr>
- 경영도서관  
전화: 880-6915 Fax : 877-7749  
<http://manlib.snu.ac.kr>

### 공 과 대 학

- 행정실  
전화 : (사무) 880-7005~7  
(교무·학생) 880-7008~10  
Fax: 877-0914  
<http://gong.snu.ac.kr>
- 기계항공공학부  
전화 : 880-8302, 1909 Fax : 880-1910  
<http://mae.snu.ac.kr>
- 화학생물공학부  
전화: 880-7067~8, 880-7400~1  
Fax : 888-7295  
<http://cbe.snu.ac.kr>
- 전기·컴퓨터공학부  
전화: 880-7305, 7241  
Fax : 871-5974, 885-6620  
<http://ee.snu.ac.kr>
- 재료공학부  
전화: 880-7085, 7185 Fax: 885-9671  
<http://mse.snu.ac.kr>
-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전화: 880-7342, 8374 Fax : 873-2684  
<http://cug.snu.ac.kr>
- 컴퓨터공학부  
전화: 880-7288 Fax : 886-7589  
<http://cse.snu.ac.kr>
- 건축학과  
전화: 880-7051 Fax : 871-5518  
<http://architecture.snu.ac.kr>
- 산업공학과  
전화: 880-7172 Fax : 889-8560  
<http://cybernet.snu.ac.kr>

- 원자핵공학과  
전화: 880-7201, 2      Fax : 889-2688  
<http://plaza.snu.ac.kr/~nucleng/>
- 조선해양공학과  
전화: 880-7321      Fax : 888-9298  
<http://ship.snu.ac.kr>
-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  
전화: 880-8386, 9140      Fax : 880-8389  
<http://tepp.snu.ac.kr>
- 협동과정 기술경영전공  
전화: 880-5108      Fax : 872-8359  
<http://tam.snu.ac.kr>
- 협동과정 생물화학공학전공  
전화: 880-8386      Fax : 880-8389  
<http://biochemeng.snu.ac.kr>
- 협동과정 의용생체공학전공  
전화: 2072-2509      Fax : 745-7870  
<http://bme.snu.ac.kr>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화: 880-7091      Fax : 871-5518  
<http://gpud.snu.ac.kr>

**농업생명과학대학**

- 행정실  
전화 : (대표) 880-4512  
(교학) 880-4505      Fax: 873-2009  
(서무) 880-4512      Fax: 873-0263  
<http://cals.snu.ac.kr>
- 식물생산과학부  
전화: 880-4540      Fax : 873-2056  
<http://plantsci.snu.ac.kr>

- 산림과학부  
전화: 880-4750      Fax : 873-2318  
<http://forestry.snu.ac.kr>
- 응용생물화학부  
전화: 880-4640      Fax : 873-2319  
<http://abc.snu.ac.kr>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전화: 880-4850      Fax : 873-5095  
<http://fabio.snu.ac.kr>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화: 880-4870      Fax : 873-5113  
<http://larse.snu.ac.kr>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전화: 880-4590      Fax : 873-2285  
<http://bio4u.snu.ac.kr>
- 농경제사회학부  
전화: 880-4710      Fax : 873-3565  
<http://ared.snu.ac.kr>
- 농생명공학부(대학원)  
전화: 880-4901      Fax : 873-2039  
<http://bk.snu.ac.kr>
- 농산업교육과(대학원)  
전화: 880-4830      Fax : 873-2042  
<http://aged.snu.ac.kr>
-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전공  
전화: 880-4901      Fax : 873-2039  
<http://cals.snu.ac.kr>
-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전화: 880-4930      Fax : 873-5410  
<http://plaza1.snu.ac.kr/~cpmgbr>
- 농 장  
전화: (031)293-0310      Fax : (031)295-4216

- **학술림**  
전화: 880-4526 Fax : 873-2031  
[http://cals.snu.ac.kr/univ\\_forests](http://cals.snu.ac.kr/univ_forests)
- **실험목장**  
전화: (031)293-0313 Fax : (031)293-0314
- **수목원**  
전화: (031)293-0319 Fax : (031)295-6660  
<http://plaza.snu.ac.kr/~arbor>
-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전화: 880-4845 Fax : 880-4847  
<http://nicem.snu.ac.kr>
- **중등교육연수원**  
전화: 880-4844 Fax : 873-2042
- **농학도서관**  
전화: 880-4774 Fax : 884-0182  
<http://aglib.snu.ac.kr>
- **농업생명과학정보원**  
전화: 880-4523, 4826 Fax : 882-7670  
<http://aginfo.snu.ac.kr>
- **농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  
전화: (031)294-8526 Fax : (031)294-8527  
<http://agbio.snu.ac.kr>

### 미 술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7453, 6885  
(교학) 880-7454~5  
Fax : 880-7462
- **디자인학부**  
전화: 880-7501, 7512 Fax : 877-8974  
<http://design21.snu.ac.kr> Fax : 888-2513

- **동양화과**  
전화: 880-7470~1 Fax : 888-7460  
<http://plaza.snu.ac.kr/~oart/>
- **서양화과**  
전화: 880-7480~1 Fax : 888-5884  
<http://painting.snu.ac.kr>
- **조소과**  
전화: 880-7492~3 Fax : 888-1585  
<http://plaza1.snu.ac.kr/~sculp>

### 법 과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7534  
(교학) 880-7536~9  
Fax : 889-7485  
<http://law.snu.ac.kr>
- **법학도서관**  
전화: 880-5328 Fax : 885-4737  
<http://slnms.snu.ac.kr/lawlib/index.html>

### 사 범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7604~5 Fax: 889-8791  
(교학) 880-7606~8  
(교육정보관) 880-4460  
<http://edu.snu.ac.kr>
- **교육학과**  
전화: 880-7630 Fax : 878-1665  
<http://learning.snu.ac.kr>
- **국어교육과**  
전화: 880-7657, 8 Fax : 880-7657  
<http://plaza.snu.ac.kr/~ed705>



- 영어교육과  
전화: 880-7670      Fax : 880-7671  
<http://engedu.snu.ac.kr>
- 불어교육과  
전화: 880-7690      Fax : 875-4884  
<http://French.snu.ac.kr>
- 독어교육과  
전화: 880-7681,2      Fax : 887-8904  
<http://plaza.snu.ac.kr/~deutsch>
- 사회교육과  
전화: 880-7700      Fax : 872-4261  
<http://plaza.snu.ac.kr/~socioedu>
- 역사교육과  
전화: 880-7708      Fax : 884-6847  
<http://www.snuhistory.snu.ac.kr>
- 지리교육과  
전화: 880-7717, 8      Fax : 882-9873  
<http://www.geoedu.snu.ac.kr>
- 국민윤리교육과  
전화: 880-7726, 7727      Fax : 888-3296  
<http://ethics.snu.ac.kr>
- 수학교육과  
전화: 880-7737      Fax : 889-1747  
<http://mathed.snu.ac.kr>
- 물리교육과  
전화: 880-7748      Fax : 873-7881  
<http://physed.snu.ac.kr>
- 화학교육과  
전화: 880-7757, 7758      Fax : 889-0749  
<http://chemedu.snu.ac.kr>
- 생물교육과  
전화: 880-7768      Fax : 886-2117  
<http://biologyedu.snu.ac.kr>

- 지구과학교육과  
전화: 880-7784      Fax : 874-3289  
<http://earth.snu.ac.kr>
- 체육교육과  
전화: 880-7806, 7      Fax : 872-2867  
<http://sports.snu.ac.kr>
- 협동과정(특수교육)  
전화: 880-7652      Fax : 878-1665  
<http://learning.snu.ac.kr>
- 협동과정 지원부(음악, 미술, 가정, 유아)  
전화: 880-9052      Fax : 882-0710  
<http://learning.snu.ac.kr/~hyup>
-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화: 880-8938      Fax : 882-9873  
<http://plaza1snu.ac.kr/~enviedu>
-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 · 중등교육연수원  
전화: 880-7810~11      Fax : 878-9886  
<http://eld.snu.ac.kr>

**생활과학대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6802~3  
          (교학) 880-6804~5  
Fax : 885-2679  
<http://che.snu.ac.kr>
- 소비자아동학부  
전화: 880-6821, 8747      Fax : 871-2506  
소비자학전공  
<http://consumer.snu.ac.kr>  
가족아동학전공  
<http://adong.snu.ac.kr>
- 식품영양학과  
전화: 880-6831      Fax : 884-0305  
<http://fdnutri.snu.ac.kr>

· 의류학과

전화 : 880-6841 Fax : 875-8359

<http://clothing.snu.ac.kr>

· 부속어린이집

전화: 880-5766 Fax : 874-5768

<http://kidshome.snu.ac.kr>

**수의과대학**

• 행정실

전화 : (서무) 880-1205~7 / 1187

(교학) 880-1208~10 Fax : 880-1213

<http://vet.snu.ac.kr>

• 동물병원

전화 : 880-8661, 7198 Fax : 880-8662

**약 학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7824, 7881

(교학) 880-7825, 2826

Fax : 888-9122

<http://www.snupharm.ac.kr>

• 약학과

전화: 880-7863 Fax : 888-9122

<http://www.snupharm.ac.kr>

• 제약학과

전화: 880-7863 Fax : 888-9122

• 약초원

전화 : (031) 977-1521

• 약학교육연수원

전화: 880-7839 Fax : 874-4169

<http://Cepharmacy.snu.ac.kr>

**음 악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880-7904, 7902

(교학) 880-7905~6

Fax : 880-7903

<http://music.snu.ac.kr>

• 성악과

전화: 880-7930~1

<http://cafe.daum.net/snusingersmetting>

• 작곡과

전화: 880-7944~5 Fax : 880-7064

• 기악과

전화: 880-7960~1 Fax : 876-2685

• 국악과

전화: 880-7981~2 Fax : 884-7168

**의 과 대 학**

• 행정실

전화: (서무) 740-8011~6 Fax : 763-0961

(교무) 740-8030~5 Fax : 763-0962

(학생) 740-8036~8 Fax : 741-2809

(연구) 740-8381~5 Fax : 740-8800

(시설) 740-8021 Fax : 763-0961

(기획) 740-8189 Fax : 740-8190

<http://medicine.snu.ac.kr>

• 해부학교실

전화: 740-8215 Fax : 745-9528

<http://anatomy.snu.ac.kr>

• 생리학교실

전화: 740-8233 Fax : 763-9667

<http://plaza.snu.ac.kr/~physiolo>

- 생화학교실  
전화: 740-8253      Fax : 744-4534  
<http://plaza.snu.ac.kr/~cmbio>
- 병리학교실  
전화: 740-8273      Fax : 765-5600  
[doohyun@plaza.snu.ac.kr](mailto:doohyun@plaza.snu.ac.kr)
- 약리학교실  
전화: 740-8293      Fax : 745-7996
- 미생물학교실  
전화: 740-8313      Fax : 743-0881  
<http://medicine.snu.ac.kr/micro>
- 예방의학교실  
전화: 740-8333      Fax : 747-4830  
<http://plaza.snu.ac.kr/~snupm>
- 기생충학교실  
전화: 740-8348      Fax : 765-6142
- 법의학교실  
전화: 740-8358      Fax : 764-8340
- 의료관리학교실  
전화: 2072-3124      Fax : 743-2009  
<http://www.snu-dhpm.ac.kr>
- 의공학교실  
전화 : 2072-2509      Fax : 745-7870  
<http://bme.snu.ac.kr>
- 의사학교실  
전화: 740-8378      Fax : 765-5110
- 내과학교실  
전화: 2072-2228,2238      Fax : 762-9662  
<http://im.snu.ac.kr>
- 외과학교실  
전화: 2072-2318      Fax : 766-3975  
<http://surgery.snu.ac.kr>
- 산부인과학교실  
전화: 2072-2388      Fax : 742-2028  
<http://medicine.snu.ac.kr/obgy>
- 소아과학교실  
전화: 2072-3570      Fax : 743-3455  
<http://ped.snuh.org>
- 정신과학교실  
전화: 2072-2457      Fax : 744-7241
- 신경과학교실  
전화: 2072-2278      Fax : 3672-7553  
<http://snuhneurology.net>
- 피부과학교실  
전화: 2072-2418      Fax : 742-7344  
<http://skin.ac.kr>
- 정형외과학교실  
전화: 2072-2368      Fax : 764-2718
- 흉부외과학교실  
전화: 2072-2340      Fax : 762-3566
- 신경외과학교실  
전화: 2072-2358      Fax : 744-8459  
<http://www.snuns.or.kr>
- 비뇨기과학교실  
전화: 2072-2427      Fax : 742-4665  
<http://web.snuh.org/~urology>
-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 2072-2448      Fax : 745-2387  
<http://snuh.snu.ac.kr/~snuol>
- 안과학교실  
전화: 2072-2437      Fax : 741-3187  
<http://eyedoctor.snuh.org>
- 방사선과학교실  
전화: 2072-2584      Fax : 743-6385  
<http://radhome.snu.ac.kr>

- 마취과학교실  
전화: 2072-2467      Fax : 747-5639  
<http://snu.anesthesia.or.kr>
- 성형외과학교실  
전화: 2072-3480      Fax : 765-9566
- 방사선종양학교실  
전화: 2072-3910      Fax : 742-2073
- 검사의학교실  
전화: 2072-2548      Fax : 747-0359  
<http://labmed.snu.ac.kr>
- 재활의학교실  
전화: 2072-2619      Fax : 743-7473  
<http://medicine.snu.ac.kr/rehab>
- 핵의학교실  
전화: 2072-3341      Fax : 745-7690  
<http://nm.snu.ac.kr>
- 가정의학교실  
전화: 2072-3335      Fax : 766-3276  
<http://fm.snu.ac.kr>
- 응급의학교실  
전화: 2072-3257      Fax : 741-7855  
<http://snuher.org>
- 의학도서관  
전화: 740-8044, 5      Fax : 740-8080  
<http://medlib.snu.ac.kr>

**치과대학 · 치의학대학원**

- 행정실  
전화 : (서무) 740-8609~10  
          (교무) 740-8611  
          (학생) 740-8612  
          (연구) 740-8700  
Fax : 745-1907  
<http://dentistry.snu.ac.kr>

- 구강해부학교실  
전화 : 740-8674      Fax : 762-6671
- 구강병리학교실  
전화 : 740-8654      Fax : 764-6088  
<http://oralpath.snu.ac.kr>
- 예방치학교실  
전화 : 740-8684      Fax : 765-1722  
<http://home.freechal.com/snupphd/>
-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전화 : 740-8694      Fax : 740-8694
- 치과약리학교실  
전화 : 740-8689, 8690      Fax : 741-3193
- 구강생리학교실  
전화 : 740-8659      Fax : 762-5107  
<http://plaza.snu.ac.kr/~oralphys>
- 구강생화학교실  
전화 : 740-8664      Fax : 740-8665
- 구강미생물학교실  
전화 : 740-8644      Fax : 743-0311  
<http://omi.snu.ac.kr>
- 치과경영정보학교실  
전화 : 740-8792      Fax : 743-7633
- 구강조직 · 발생생물학교실  
전화 : 740-8726      Fax : 763-3613  
<http://plaza.snu.ac.kr/~histo>
- 치과보철학교실  
전화 : 2072-3816      Fax : 2072-3860
- 치과보존학교실  
전화 : 2072-3815      Fax : 2072-3859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전화 : 2072-3813      Fax : 766-4948
- 소아치과학교실  
전화 : 2072-3819      Fax : 744-3599

- 치주과학교실  
전화 : 2072-3858      Fax : 744-0051
-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전화 : 2072-3812      Fax : 744-3919
-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전화 : 2072-3811      Fax : 744-9135
- 치과교정학교실  
전화 : 2072-3817      Fax : 2072-3817  
<http://www.snuortho.org>
- 치과마취과학교실  
전화 : 2072-3866      Fax : 766-9427
- 치의학도서관  
전화 : 740-8621, 8794      Fax : 743-7198  
<http://dentlib.snu.ac.kr>

## 대 학 원

- 행정실  
전화: 880-5161      Fax : 889-7528

## 전 문 대학 원

### 보건대학원

- 행정실  
전화: (사무) 740-8856  
      (교학) 740-8857  
      (연구) 740-8860  
Fax : 762-9105  
<http://health.snu.ac.kr>

### 행정대학원

- 행정실  
전화: (사무) 880-5602  
      (교무) 880-5603  
Fax : 882-3998  
<http://gspa.snu.ac.kr>
- 전산실  
전화 : 880-8543

### 환경대학원

- 행정실  
전화: (사무) 880-5641  
      (교학) 880-5642  
Fax : 886-7935  
<http://gses.snu.ac.kr>
- 환경계획학과  
전화: 880-5646      Fax : 871-8847
- 환경조경학과  
전화: 880-5660      Fax : 874-7181

### 국제대학원

- 행정실  
전화: (사무) 880-8501  
      (교학) 880-8505, 8509  
Fax : 879-1496  
<http://gsis.snu.ac.kr>

## 연 구 소

### 본부직할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전화: 880-1325(소장실)  
880-4052 (사무실)  
Fax : 874-7305  
tongil@snu.ac.kr  
http://tongil.snu.ac.kr

### 인문대학 주관

- 인문학연구원  
전화: 880-6011 (소장실)  
880-6020 (사무실)  
Fax : 874-7787  
inmunyun@plaza1.snu.ac.kr  
http://plaza1.snu.ac.kr/~inmunyun
- 한국문화연구소  
전화: 880-5504, 5505  
hanyon@plaza1.snu.ac.kr/~hanyon
- 미국학연구소  
전화: (행정실) 880-5436, (도서관) 6029  
Fax : 878-2955  
astudies@snu.ac.kr  
http://amstin.snu.ac.kr
- 인지과학연구소  
전화: 880-7734, 6174 Fax : 886-9604  
http://cogsci.snu.ac.kr
- 철학사상연구소  
전화: 880-6223 Fax : 874-0126  
http://philinst.snu.ac.kr
- 역사연구소  
전화: 880-8068 Fax : 875-8607

### 사회과학대학 주관

- 사회과학연구원  
전화: 880-5475, 5476 Fax : 886-0976  
css@plaza.snu.ac.kr  
http://plaza.snu.ac.kr/~css
- 경제연구소  
전화: 880-5433 Fax : 888-4454  
http://econ.snu.ac.kr/~ecores
- 언론정보연구소  
전화: 880-5480/6475 Fax : 873-1451  
http://communication.snu.ac.kr/icr
- 국제문제연구소  
전화: 880-6310~1 Fax : 872-4115  
http://plaza.snu.ac.kr/~cissnu
- 심리과학연구소  
전화: 880-6316 Fax : 880-6477  
http://psych.snu.ac.kr/instps/
- 사회발전연구소  
전화: 880-8799 Fax : 878-9337  
http://sociology.snu.ac.kr/isdpr
- 국토문제연구소  
전화: 880-6322 Fax : 877-7656  
http://proms.snu.ac.kr/~ikors
- 여성연구소  
전화: 880-8951 Fax : 880-6287  
http://igender.snu.ac.kr

### 자연과학대학 주관

- 기초과학연구원  
전화: 880-5492 Fax : 888-4185  
http://science.snu.ac.kr
- 유전공학연구소  
전화: 880-5491 Fax : 874-1206  
http://plaza.snu.ac.kr/~imbg

- 해양연구소  
전화: 880-6512      Fax : 887-8821  
<http://rio.snu.ac.kr>
- 이론물리학연구소  
전화: 880-6523      Fax : 884-7167  
<http://ctp.snu.ac.kr>
- 미생물연구소  
전화 : 880-6528      Fax : 888-4911  
<http://plaza.snu.ac.kr/~microbio>
- 수학연구소  
전화: 880-6562      Fax : 877-8435  
[rim@math.snu.ac.kr](mailto:rim@math.snu.ac.kr)  
<http://www.rim.snu.ac.kr>
-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전화: 887-2690-1      Fax : 887-2692  
<http://www.bio-max.org>

**간호과학대학 주관**

- 간호과학연구소  
전화: 740-8839      Fax : 747-3948  
[snunsrc@snu.ac.kr](mailto:snunsrc@snu.ac.kr)  
<http://rins.snu.ac.kr>

**경영대학 주관**

- 경영연구소  
전화: 880-6909      Fax : 872-6366
- 노사관계연구소  
전화: 880-6913      Fax : 872-2206
- 경영정보연구소  
전화: 880-6954      Fax : 876-8411  
<http://plaza.snu.ac.kr/~iiom>
- 증권·금융연구소  
전화: 880-6854      Fax : 876-8411

**공과대학 주관**

- 반도체공동연구소  
전화: 880-5460      Fax : 875-2488  
<http://isrc.snu.ac.kr>
- 공학연구소  
전화: 880-7013~4      Fax : 887-9592  
<http://eritech.snu.ac.kr>
- 신소재공동연구소  
전화: 880-5510      Fax : 887-6388  
<http://riam.snu.ac.kr>
-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전화: 880-5512      Fax : 888-4182  
<http://asri.snu.ac.kr>
- 컴퓨터연구소  
전화: 880-7301      Fax : 888-1048  
<http://ict.snu.ac.kr>
-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전화: 880-5513      Fax : 889-6205  
<http://iamd.snu.ac.kr>
-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전화: 880-8400      Fax : 888-3633  
<http://www.inmc.snu.ac.kr>
-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전화 : 880-8701      Fax : 873-2717  
<http://rier.snu.ac.kr>
-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전화 : 880-8377      Fax : 884-3803  
<http://rimse.snu.ac.kr/>
-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전화: 880-8343      Fax : 880-1560  
<http://cheme.snu.ac.kr>
-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전화 : 880-8980      Fax : 872-9262  
<http://iaat.snu.ac.kr>

-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전화 : 880-4315~7 Fax : 885-1081

**농업생명과학대학 주관**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전화 : 880-4910~4 Fax: 873-7729  
agsearch@snu.ac.kr  
http://agsearch.snu.ac.kr

-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전화 : 880-4920, 873-5220 Fax : 873-5260  
rcnbma@snu.ac.kr  
http://cab.snu.ac.kr

**미술대학 주관**

- 조형연구소  
전화: 880-7457 Fax : 888-8935

**법과대학 주관**

- 법학연구소  
전화 : 880-5471 Fax : 873-6269  
lrint@snu.ac.kr  
http://lawi.snu.ac.kr

**사범대학 주관**

- 교육종합연구원  
전화: 880-8834 Fax : 888-2571  
http://edulab.snu.ac.kr
- 스포츠과학연구소  
전화: 880-7617~8 Fax : 884-7616  
http://peri.snu.ac.kr
- 교육연구소  
전화: 880-7615 Fax: 889-6509  
http://eri.snu.ac.kr

- 국어교육연구소  
전화: 880-7666 Fax : 878-2593  
http://plaza.snu.ac.kr/~korinst

**생활과학대학 주관**

- 생활과학연구소  
전화 : 880-6806 Fax: 879-1976  
http://living.snu.ac.kr

**수의과대학 주관**

- 수의과학연구소  
전화 : 880-1234/1196~7 Fax : 880-1233  
http://vetsci.snu.ac.kr

**약학대학 주관**

- 종합약학연구소  
전화:880-7827 Fax : 884-8334  
http://www.snurips.ac.kr
- 천연물과학연구소  
전화: 740-8901~3 Fax : 742-9951  
http://plaza1.snu.ac.kr/~napri

**음악대학 주관**

- 동양음악연구소  
전화 : 880-7907 Fax : 885-7907  
http://asianmusic.snu.ac.kr
- 서양음악연구소  
전화 : 880-7908, 7901 Fax : 876-0505  
http://wmri.snu.ac.kr
- 오페라연구소  
전화: 880-7943 Fax : 880-7943  
http://plaza.snu.ac.kr/~music/musicstudy/opera.php



**의과대학 주관**

- 의학연구원  
전화 : (원장실) 740-8003  
(행정실) 740-8944  
Fax : 762-8935  
<http://snumrc.snu.ac.kr>
- 암연구소  
전화: 740-8092 Fax : 766-4477  
(행정실) 3668-7009  
<http://cri.snu.ac.kr>
- 간연구소  
전화: (교환)740-8116 Fax : 743-6701  
<http://www.lri.or.kr>
-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전화: 740-8504, 880-2510~2  
Fax : 742-0620, 886-8782

**보건대학원 주관**

- 보건환경연구소  
전화: 3668-7858

**행정대학원 주관**

- 한국행정연구소  
전화 : 880-5612 Fax : 882-5608
-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전화 : 880-8545 Fax : 883-7089

**환경대학원 주관**

- 환경계획연구소  
전화 : 880-5643,882-9366 Fax : 883-8620  
<http://gses.snu.ac.kr/institute>

**국제대학원 주관**

- 국제학연구소  
전화 : 880-8975 Fax : 884-9352  
<http://gsis.snu.ac.kr>
- 일본연구소  
전화 : 880-8503 Fax : 874-3689  
<http://gsis.snu.ac.kr/japan>

**치의학대학원 주관**

- 치학연구소  
전화: 740-8701 Fax : 741-1090  
<http://dri.snu.ac.kr>
- 치의학교육연수원  
전화: 740-8603 Fax : 745-1907

**부속시설**

- 박물관  
전화: 880-5332 Fax : 874-3999  
<http://museum.snu.ac.kr>
- 규장각  
전화: 880-5316~9 Fax : 883-7015  
<http://kyujanggak.snu.ac.kr>
- 학생기숙사  
전화: 880-5404~5 Fax : 877-2892  
[jesin@snu.ac.kr](mailto:jesin@snu.ac.kr)  
<http://dorn.snu.ac.kr>
- 보건진료소  
전화: 880-5338 Fax : 880-5350  
<http://health4u.snu.ac.kr>

- 건강증진센터 <http://snuwellbeing.snu.ac.kr>
- 연건분소  
전화: 740-8108, 8109
  -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 880-5392 Fax : 885-4483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ctl.snu.ac.kr>  
글쓰기 교실 <http://writing.snu.ac.kr>  
eTL(e-Teaching&Learning) <http://etl.snu.ac.kr>
  -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전화: 880-5334~5 Fax : 886-0578  
<http://plazal.snu.ac.kr/~lac>
  - 기초과학공동기원  
전화: 880-5430 Fax : 884-6661  
<http://irf.snu.ac.kr>
  - 언어교육원  
전화: 880-5483, 5484 Fax : 871-6907  
[lei@snu.ac.kr](mailto:lei@snu.ac.kr)  
<http://language.snu.ac.kr>
  - 대학생활문화원  
전화: 880-5495, 5501 Fax : 871-6033  
[snucounsel@snu.ac.kr](mailto:snucounsel@snu.ac.kr)  
<http://snucounsel.snu.ac.kr>
  - 성희롱 · 성폭력상담소  
전화 : 880-5073 Fax : 886-8056  
<http://help.snu.ac.kr>
  - 기록관  
전화 : 880-8810, 8819 Fax : 884-7149  
<http://archive.snu.ac.kr>
  - 환경안전원  
전화 : 880-5500, 5506~8 Fax : 885-4738  
<http://eps.snu.ac.kr>

## 부 설 학 교

- 부설고등학교  
전화(교장실) : 913-7304  
(교무실) : 913-7305, 7307, 911-3945  
(행정실) : 913-7306  
Fax (서 무) : 917-7154  
(교 무) : 919-5275  
<http://www.snu.hs.kr>
- 부설중학교  
전화(교장실) : 943-5814  
(교무실) : 943-5812  
(행정실) : 943-5811  
Fax : 942-0180  
<http://www.snu.ms.kr>
- 부설여자중학교  
전화(교장실) : 762-0220  
(교무실) : 762-5252  
(행정실) : 762-5251  
Fax (서 무) : 741-0760  
(교 무) : 745-0664  
<http://www.snu-g.ms.kr>
- 부설초등학교  
전화(교장실) : 762-5256  
(교무실) : 762-5250  
(행정실) : 762-5253  
Fax : 766-4085

## 법 인 및 기타기관

- 서울대 발전기금  
전화: 880-5026~7 Fax : 872-4149  
<http://www.snu.or.kr>
- 서울대학교출판부  
전화: 880-5216~20 Fax : 888-4148  
[snubook@snu.ac.kr](mailto:snubook@snu.ac.kr)  
<http://www.snupress.com>  
<http://eng.snupress.com>
- 대학신문사  
전화: 880-5213~5 Fax : 872-9511  
[snupress@snu.ac.kr](mailto:snupress@snu.ac.kr)  
<http://www.snunews.com>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전화: 880-6780~6 Fax : 872-3150  
[coop@plaza.snu.ac.kr](mailto:coop@plaza.snu.ac.kr)  
<http://snuco.snu.ac.kr>
- 서울대학교병원  
대표전화 : 760-2714 Fax : 743-2838  
<http://www.snuh.org>
-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전화: 880-5516, 871-6508~9  
Fax : 883-0827  
<http://er.snu.ac.kr>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표전화 : 2072-3114 Fax : 745-7798  
<http://www.snudh.or.kr>
-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  
전화: 880-1341 Fax : 884-9759  
<http://spolex.snu.ac.kr>
-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전화: 880-7890~2 Fax : 872-1813  
[snuif@snuif.ac.kr](mailto:snuif@snuif.ac.kr)

### 3. 서울대학교 학칙

개정	1986. 1. 25	규칙 제668호	1999. 5. 25	규칙 제1126호
	1986. 4. 30	규칙 제673호	1999. 7. 21	규칙 제1129호
	1986. 7. 5	규칙 제681호	1999. 11. 24	규칙 제1139호
	1987. 4. 28	규칙 제696호	2000. 2. 3	규칙 제1147호
	1987. 9. 1	규칙 제700호	2001. 2. 1	규칙 제1169호
	1987. 11. 17	규칙 제709호	전문개정	2001. 8. 31
전문개정	1988. 2. 22	규칙 제714호	개정	2002. 2. 21
개정	1988. 12. 15	규칙 제738호	2002. 6. 7	규칙 제1321호
	1989. 6. 14	규칙 제754호	2002. 10. 25	규칙 제1362호
	1989. 11. 15	규칙 제771호	2003. 1. 1	규칙 제1368호
	1990. 1. 29	규칙 제786호	2003. 2. 25	규칙 제1376호
	1990. 1. 29	규칙 제787호	2003. 6. 11	규칙 제1380호
	1990. 12. 4	규칙 제818호	2003. 8. 23	규칙 제1404호
	1991. 4. 26	규칙 제829호	2004. 1. 16	규칙 제1408호
	1991. 5. 15	규칙 제832호	2004. 2. 24	규칙 제1420호
	1992. 4. 20	규칙 제866호	2004. 5. 12	규칙 제1434호
	1992. 8. 27	규칙 제887호	2004. 8. 3	규칙 제1455호
	1993. 4. 21	규칙 제901호	2004. 10. 28	규칙 제1460호
	1993. 8. 2	규칙 제910호	2004. 11. 19	규칙 제1467호
	1993. 8. 31	규칙 제912호	2005. 1. 13	규칙 제1470호
	1993. 8. 31	규칙 제912호	2005. 2. 28	규칙 제1475호
	1993. 12. 22	규칙 제923호	2005. 8. 23	규칙 제1496호
	1993. 12. 27	규칙 제925호	2005. 11. 1	규칙 제1517호
	1994. 4. 25	규칙 제932호	2005. 12. 27	규칙 제1519호
	1995. 2. 16	규칙 제954호	2006. 2. 1	규칙 제1522호
	1995. 10. 10	규칙 제976호	2006. 2. 27	규칙 제1526호
	1996. 4. 3	규칙 제1003호	2006. 2. 27	규칙 제1529호
	1996. 7. 16	규칙 제1014호	2006. 2. 27	규칙 제1535호
	1996. 12. 24	규칙 제1028호	2006. 3. 22	규칙 제1543호
	1997. 5. 30	규칙 제1049호	2006. 4. 12	규칙 제1546호
	1997. 6. 24	규칙 제1059호	2006. 6. 16	규칙 제1562호
	1997. 10. 18	규칙 제1072호	2006. 8. 3	규칙 제1564호
	1998. 3. 13	규칙 제1087호	2006. 8. 24	규칙 제1573호
	1998. 9. 10	규칙 제1104호	2006. 10. 4	규칙 제1575호
	1999. 1. 12	규칙 제1112호	2007. 2. 8	규칙 제1583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

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삭제 <2003. 8. 23>

제 4 조 삭제 <2003. 8. 23>

제 5 조 (교육조직의 설치) ①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부)”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본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학부 및 학과는 대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③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 또는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교과과정상 전공을 둘 수 있다. 단,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학과(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6 조 (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학부 또는 학과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 본교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매 2년 마다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조 (전임교수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전임교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타 학과(부) 또는 부속시설에 겸임될 수 있다.

②총장은 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③겸임교수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 (명예교수) 본교에 명예교수를 두며 추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의 2 (연구년) 본교 전임교수가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만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년제도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4. 10.28>

제 9 조 (교과과정의 운영) ①교과과정은 각 학과(부) 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간에 일관성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 횡적으로 각 학과(부)와 각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상호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04. 8. 3>

②학사과정의 기초교육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 8. 3>

③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8. 3>

제 10 조 (교육 등의 위탁) ①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기초교양교육 등을 위하여 입학 후 일정기간 동안 타 대학 또는 기초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4. 8. 3>

②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의 인사관리는 대학원장이 각 학장과 전문대학 원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학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에게 학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학(원)간·학과(부)간·부속시설간 협조) ①2개 이상의 학부·학과나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교과과정·인사·예산·시설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8. 3>

②2개 이상의 부속시설간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조 직

### 제 1 절 총장·부총장

제 11 조의2 (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03. 8. 23]

제 11 조의3 (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03. 8. 23]

### 제 2 절 교육조직

제 12 조 (대학·대학원 등) ①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을 둔다.

②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을 둔다.<개정 2003. 2. 25, 2005. 2. 28, 2006. 8. 24>

③대학에 별표1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제 13 조 (학생의 소속)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1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1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대학원과정 학생은 별표3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제 14 조 (학사과정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제 15 조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 ①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학장 등) ①대학에 학장,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부설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장이 대학원과정의 학생교육을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당해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이 담당한다.

④대학에 교무부학과장 학생부학과장(단, 간호·미술·생활과학·수의과·음악대학에는 부학과장 1인)을, 전문대학원에 부원장(단, 치의학대학원에는 교무부원장과 학생부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5. 2. 28, 2005. 12. 27>

⑤교무부학(원)장은 입학·졸업·학적·강좌·교과과정·학술연구·수업·학점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학생부학(원)장은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

한 사항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2. 28>

⑥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원)장(부학(원)장 2인인 대학(원)은 교무부학(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2. 28>

제 17 조 (학부장 및 학과장) ①대학과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대학과 대학원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상호 겸보할 수 있다.

③학부장 및 학과장은 학부 및 학과의 운영을 통괄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좌한다.

제 18 조 (교수회) ①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원)장이 된다.

③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④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수회는 당해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발의
2. 입학, 수료 및 졸업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4. 학생 포상 및 징계
5. 교과과정
6.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7.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 조정
8.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 3 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 19 조 (부속시설) ①본교에 지원시설로 입학관리본부·대의협력본부·정보화본부·중앙도서관 및 기초교육원을 둔다.<개정 2002. 6. 7>

②본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 5. 12>

③본교에 별표4의 연구시설과 별표5의 부속시설을 두며, 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2. 28>

④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에 각각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⑥ <삭제 2005. 2. 28>

⑦총장은 부속시설 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와 존속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0 조 (입학관리본부) ①입학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입학관리과장은 대학신입학전형·편입학전형·대학원입학전형, 석·박사통합과정 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입학관리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1 조 (대외협력본부) ①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교육행정사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  
 ③대외협력팀장은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체결, 대외협력업무 지원, 국외유학 및 교류, 외국인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대외협력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2 조 (정보화본부) ①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3. 6. 11>  
 ②본부장은 대학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 6. 11>  
 ③정보화본부에 중앙전산원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원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3. 6. 11, 2005. 2. 28, 2006. 8. 3>  
 ④중앙전산원 산하에 연건분원을 두며, 분원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03. 6. 11, 개정 2006. 8. 3>  
 ⑤정보화본부에 정보화기획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원 또는 전산사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 2003. 6. 11, 2006. 8. 3>  
 ⑥정보화기획팀장은 대학 종합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대학 정보화 사업 및 예산 총괄 조정, 캠퍼스전산망 관리 지원, 정보자원 관리와 학술정보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03. 1. 1, 2003. 6. 11, 2005. 2. 28>  
 ⑦중앙전산원에 교육연구지원부, 정보관리부, 전산망부, 사용자지원부, 정보기반지원실 및 정보서비스지원실을 둔다.<신설 2005. 2. 28, 개정 2006. 8. 3>  
 ⑧정보화본부 및 중앙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 제 23 조 (중앙도서관 등) ①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도서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도서관의 전문분야별 분관으로 사회과학도서관·경영학도서관·농학도서관·법학도서관·의학도서관·치의학도서관·국제학도서관을 두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6. 4. 12>  
 ④각 분관장은 분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도서관에 수서정리과·정보관리과 및 행정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10. 4>  
 ⑥수서정리과장은 도서관 자료의 기본계획 수립, 자료의 선정·구입·등록·제적·폐기·분류·편목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⑦정보관리과장은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보관, 서고 및 자료실관리, 제본·참고봉사·정보지원·상호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전자도서관 구축 및 관리,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행정지원팀장은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회계 및 물품관리, 분관관리 및 지원과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⑨도서관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의2 (기초교육원) ①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기초교육원장은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04. 8. 3>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 8. 3>

⑤기초교육원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원장을 보좌하여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8. 3>

⑥기초교육원에 행정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3>

⑦행정지원팀장은 기초교육예산운영, 학사관리, 서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8. 3>

⑧기초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8. 3>

[본조 신설 2002. 6. 7]

제 23 조의3 (산학협력단)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처장으로 겸보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②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연구부처장으로 겸보한다.

③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 감사의 선임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5. 12]

제 24 조 (부설학교) ①사범대학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초등학교
2. 부설중학교
3. 부설여자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부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 제 4 절 행정조직

제 25 조 (처·실·국) ①본교에 교무처·학생처·연구처·기획실·사무국 및 시설관리국을 두며 각 처장과 기획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6. 8. 3>

②각 처와 실에 처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과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 26 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장은 대학·대학원·학과(부) 및 과정의 설치와 폐지, 교과과정의 작성, 학생정원의 관리, 교원 및 조교의 인사, 박물관·미술관·언어교육원 및 연수원에 관한 사항과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3. 1. 1, 2004. 2. 24>

③학사과장은 입학·등록·휴학·복학·전과(부)·전학·학적·제적·졸업·학위수여·수강신청·수업관리·교외교육·실습·공통시험관리·성적·교구·교육보조자료·교수학습개발센터 등 수업 및 실습

관련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27 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와 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장은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학생상벌 및 병무지원, 문화 및 체육활동, 문화관·학생회관·두레문예관·대학생활문화원·성희롱·성폭력상담소·대학신문사의 관리·지원과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복지과장은 장학에 관한 사항과 보건 및 후생복지, 경력개발센터·학생기숙사·보건진료소의 관리·지원 및 기타 교내 후생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6. 4. 12>

제 28 조 (연구처) ①연구처에 연구진흥과와 연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연구진흥과장은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비 유치 및 관리, 간접연구경비 관리,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지적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5. 12>

③연구지원과장은 학술교류활동 지원, 연구소(원)의 설치·지원 및 평가, 특별연구사업 수행, 연구년제도 운영, 연구성과의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연구용 기자재 관리와 규장각·실험동물자원관리원·기초과학공동기원·출판부 및 연구지원 관련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5. 12, 2004. 8. 3, 2005. 1. 13>

[전문개정 2003. 1. 1]

제 29 조 (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담당관은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설·재정 및 예산관련 기획, 대학운영의 평가 및 분석, 홍보,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관리 및 기록관 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 30 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 및 예산담당관을 두며,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보안·인사(교원의 인사를 제외한다)·관인관수·문서관리·법령·예규·비상계획 및 연금과 기타 다른 처·실·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재무과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자금관리·급여에 관한 사항과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심사분석과 감사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 31 조 (시설관리국) ①시설관리국에 관리과·시설과 및 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 8. 3>

②관리과장은 건물의 관리·청소·조경·경비·차량관리 및 소방과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시설과장은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환경 등 시설물의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기술과장은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 기타 내부설비와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32 조 (대학행정실) ①대학(원)에 15개의 범위내에서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행정실장은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입학·졸업·학위 및 교과과정
2. 학적관리·수업·학점 및 성적

3. 학생지도 및 상벌
4. 장학·취업지도·보건 및 후생
5. 연구·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6. 발전계획 및 대외교류 지원
7. 보안·관인관수·문서관리·인사·회계와 시설관리
8. 부속시설의 운영 및 지원
9. 기타 대학(원)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 절 학장회 및 위원회

제 33 조 (학장회) ①본교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②학장회는 총장·부총장·학(원)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 및 중앙도서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03. 1. 1, 2004. 8. 3>

③학장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④학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부·학과·전공 및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3.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대학(원)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학칙·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등 제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학장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 34 조 (기획위원회) ①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는 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기획부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3. 1. 1, 2003. 8. 23>

③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기획위원회에 일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기획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 35 조 (재정위원회) ①본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부총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정보화본부장·기획부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이 된다.<개정 2003. 8. 23, 2005. 2. 28>

③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2.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
3. 재원별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 작성
4. 주요사업에 관한 우선순위 심의
5. 재정운용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6. 기타 재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재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재정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 36 조 (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03. 1. 1>

③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5.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석사·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⑤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위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예비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둔다.

제 37 조 (대학인사위원회) ①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인사위원회는 학(원)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개정 2003. 1. 1, 2004. 1. 16>

③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 전보 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부총장·학(원)장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4. 1. 16>
- ⑥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1. 16>
- ⑦대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 ⑧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8 조 (기초교육위원회) ①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 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8. 3>

- ②기초교육위원회는 부총장, 기초교육원장·기초교육원부원장·교무부처장·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과 총장이 학내외에서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교육원장이 된다.<개정 2004. 8. 3>
- ③기초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교양교육 정책과 관련된 발전계획<신설 2004. 8. 3>
  2. 교양교과과정의 제정·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4. 8. 3>
  3. 기타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4. 8. 3>
- ④기초교육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기초교육위원회의 간사는 기초교육원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2. 6. 7, 2004. 8. 3>

제 39 조 (학사운영위원회) ①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학사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부처장·입학관리본부장·기초교육원 부원장 및 각 대학(원) 교무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개정 2004. 8. 3>
- ③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료 및 학위수여 대상자 선정
  3. 기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④학사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학사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 ⑥전항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 (연구위원회) ①학술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연구위원회는 교무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연구부처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개정 2004. 5. 12>
- ③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보고서·논문집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간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 ④연구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연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1>

제 41 조 (정보화위원회) ①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②정보화위원회는 부총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중앙도서관장·정보화본부장·중앙전산원장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05. 2. 28, 2006. 8. 3>

③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화 사업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2. 28>
4.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정보화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03. 1. 1>

제 41 조의2 (연구감사위원회) ①연구비의 관리·지출에 관한 회계를 검사하고 연구 책임자와 기타 관계인의 연구관련 직무를 감찰하여 연구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연구감사위원회를 둔다.<신설 2006. 2. 1>

②연구감사위원회는 부총장·교무처장·연구처장·사무국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신설 2006. 2. 1>

③연구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6. 2. 1>

제 41 조의3 (연구진실성위원회) ①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 6. 16>

②연구진실성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③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6. 16>

## 제 6 절 평의원회

제 42 조 (평의원회) ①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평의원회는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전임교수 및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인사 등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평의원의 수는 전체 평의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 부총장, 학(원)장, 처·실장, 도서관장, 부학(원)장, 부처·실장 및 본부장 (이하 “주요 보직교수”라 한다)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③주요 보직교수와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주요 보직 교수와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제4항과 같다.

⑥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 집회되며,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⑦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총장은 평의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의를 요구

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⑨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부·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 3. 22>
6. 위 각 호와 관련된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6. 3. 22>

⑩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제9항 제6호에 규정된 학칙 등은 제외)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3. 22>
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 3. 22>
5. 기타 총장,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⑪평의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 16>

⑫평의원회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이 아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및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⑬평의원회에 행정지원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⑭평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 8. 23]

### 제 3 장 학 사 운 영

####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 43 조 (학년·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제 44 조 (수업주수) ①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45 조 (휴업) ①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하기휴가·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 46 조 (수업연한·재학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은 5년,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그 교육과정을 예과2년, 전공학과 4년으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각각 2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4년 이상, 석사·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6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교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 통합과정 및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2. 10. 25, 2005. 2. 28, 2006. 8. 24, 2007. 2. 8>

③재학연한은 학사과정은 8년(예과는 4년)을, 석사과정은 4년을,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8년을,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3년을, 박사과정은 6년을,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유급규정을 적용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과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학사과정의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이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005. 2. 28, 2006. 8. 24, 2007. 2. 8>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 47 조 (입학시기) ①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시기는 매학기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 48 조 (학사과정 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49 조 (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50 조 (박사과정 입학자격)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51 조 (석사·박사 통합과정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 ①석사·박사 통합과정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2007. 2. 8>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석사·박사 통합과정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7. 2. 8>

제 52 조 (대학원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①대학원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부·학과 이외의 학부·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는 지원자격을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②학부·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모집시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개정 2003. 6. 11>

③출신학부·학과의 범위는 부전공 학부·학과를 포함한다.

제 53 조 (입학전형) ①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 ②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한다.
- ③입학고사의 관리·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4 조 (편입학) ①학사과정의 편입학은 정원내편입학과 정원외편입학으로 구분한다.

- ②정원내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학년의 신입생 선발시 편입학을 목적으로 배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05. 2. 28>
- ③정원외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3학년 입학총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단, 제85조의 위탁생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 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3. 6. 11]

제 55 조 (정원의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2005. 2. 28>

제 56 조 (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 절 학적관리

제 57 조 (전과(부)) ①학사과정의 전과(부)는 매학년도 말에 허가하며, 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②전과(부)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부)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8 조 (휴학 및 제적)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체복무”라 함)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단, 등록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 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8>

- ②당해학기 수업주수 4분의 2 이후에 군복무, 군대체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군입영 증빙서류, 군대체복무 관련 증빙서류,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10. 28>

- ③휴학기간은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3학기), 석사과정 4학기,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8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0 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예외로 하며, 종강일 이후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당해 학기는 등록학기로 간주하고, 휴학의 효력은 휴학원 제출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학사력상 잔여기간은 휴학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0. 28, 2005. 2. 28, 2006. 8. 24, 2007. 2. 8>

④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⑤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 59 조 (복학 및 복적) ①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 60 조 (재입학)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여 그 학기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는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46조에 의한 재학년한 초과자, 제98조 제3항에 의한 징계 제명된 자, 제100조에 의한 학사제명·유급제명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④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61 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2 조 (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 4 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 63 조 (수강신청) ①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4 조 (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 65 조 (학점) 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 66 조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또는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7 조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8 조 (전공이수) ①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2.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3.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이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제공하거나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연합전공

②<삭제 2003. 6. 11>

③제1항의 전공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제 69 조 (과정 이수 학점) ①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 학사과정은 전공과목을 주로 과하며 교양과목은 해당 예과에서 과하되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학사과정의 연합전공 이수자는 연합전공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교과목 학점을,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교과목과 부전공 학부·학과에서 정하는 교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165학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및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2. 28, 2006. 8. 24, 2007. 2. 8>

④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70 조 (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 71 조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6. 4. 12, 2006. 8. 24>

제 72 조 (선수과목)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3 조 (타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분의 2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4 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교과목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2.0 이상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2005. 2. 28>

제 5 절 시험과 성적

제 75 조 (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76 조 (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A <sup>+</sup>	4.3
A <sup>0</sup>	4.0
A.	3.7
B <sup>+</sup>	3.3
B <sup>0</sup>	3.0
B.	2.7
C <sup>+</sup>	2.3
C <sup>0</sup>	2.0
C.	1.7
D <sup>+</sup>	1.3
D <sup>0</sup>	1.0
D.	0.7
F	0

②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 77 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이 확정 될 때까지는 “I”로 처리된다.

제 6 절 수료와 졸업

제 78 조 (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에는 33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에는 6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에는 98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에는 130학점 이상

② 학사과정에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제 79 조 (학사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별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희망학기 수업주수 4분의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졸업증서에는 제5조 제4항에 의한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제 80 조 (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이나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2007. 2. 8>

③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거나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2007. 2. 8>

④학위기에는 제5조 제4항에 의한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제 81 조 (학위수여) ①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제 7 절 특별학점취득·계절학기·공개강좌

제 82 조 (특별학점 취득) ①특별학점 취득을 위하여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3 조 (계절학기 등) ①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에서 9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4 조 (공개강좌) 본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절 위탁생·특별수강생 등

제 85 조 (위탁생) ①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의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③위탁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6 조 (특별수강생) ①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8 조 (연수연구원) ①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연수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89 조 (대학원연구생)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준다.

②대학원연구생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 장 학 생

### 제 1 절 학생활동

제 90 조 (학생회 등) ①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1 조 (학생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92 조 (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3 조 (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 절 장 학

제 94 조 (수업료 면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생수의 100분의 30 이 내에서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95 조 (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6 조 (학비보조 등) ①간호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학생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 3 절 규율과 상벌

제 97 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8 조 (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②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9 조 (학사경고) ①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유급규정에 따른다.

②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3학점, 연속하여 함께 2회 이상 받은 학생에 대하여 6학점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상한 학점에서 하향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제 99 조의2 (유급) 학사과정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치의학대학원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5. 2. 28>

[본조 신설 2003. 6. 11]

- 제 100 조 (학사제명·유급제명) ①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99조의 학사경고를 함께 4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사제명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학사제명을 유보 받은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②학사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제99조의2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유급 처분을 동일학년에서 함께 2회를 받은 경우가거나 재학년한내 함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명한다.<개정 2003. 6. 11>

### 제 5 장 납 입 금

- 제 101 조 (납입금 납부의무)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복학자의 납입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3 조 (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실험실습비 등)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05 조 (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②전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5. 1. 13>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 6 장 학 칙 개 정

- 제 106 조 (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장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제 107 조 (규정 제정 및 개정) 총장이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장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8>

1. 학칙 등 상위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신설 2004. 10. 28>
2.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내용을 반영한 규정의 개정<신설 2004.10.28>
3.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신설 2004. 10. 28>

부 칙 (제668호, 1986. 1. 25)

이 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3호, 1986. 4. 30)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8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동전)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기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변경학칙에 의한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681호, 1986. 7. 5)

이 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96호, 1987. 4. 28)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입학을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70조 제5항 및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87. 9. 1 규칙 제700호>

부 칙 (제700호, 1987. 9. 1)

이 변경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9호, 1987. 11. 17)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4호, 1988. 2. 22)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의 졸업정원은 제15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의·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적용된다.
- ③(동전) 1987학년도 이전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한 자는 계속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동전)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재적학생은 이 개정학칙의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동전) 이 개정학칙 중 제43조의 입학정원이란 1989학년도까지는 졸업정원을 뜻한다.
- ⑥(동전) 이 학칙 제43조의 2의 규정은 1989학년도부터 적용하며, 1988학년도 이전에는 학과별 기준 졸업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학 및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⑦(동전) 이 학칙 제44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198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8학년도에 제2·3·4학년, 1989학년도에 제3·4학년, 1990학년도에 제4학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준 졸업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또는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 ⑧(동전) 이 학칙 제64조의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1990학년도 조기졸업예정자 포함)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정원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고 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⑨(졸업정원 감축 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042호, 1986. 12. 31) 부칙 제2항에 의거 1981학년도 이후 졸업정원이 감축된 대학·계열 또는 학과별 졸업정원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축되기 이전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부 칙 (제738호, 1988. 12. 15)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4호, 1989. 6. 14)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대학원 석사과정 과학교육과 지학전공에 재학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대학원 석사과정 과학교육과 지구과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71호, 1989. 11. 15)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6호, 1990. 1. 29)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 전공의 명칭변경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동전)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과대학 전자계산기공학과, 농과대학 잠사학과, 농업교육과(농촌지도교육 전공), 미술대학 산업미술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농과대학 천연섬유학과, 농업교육과(농촌사회교육 전공),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1987학년도 이전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1학년도 제2학기 이후에 재학하는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가정대학 소비자 이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87호, 1990. 1. 29)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8호, 1990. 12. 4)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와 전산과학전공 및 통계학전공 신설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동전) 1990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1994학년도 이후까지 재적한 학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계산통계학과 전산과학 전공 또는 계산통계학과 통계학전공에 재적한다.

④(동전) 제90조 및 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9학년도 이전에 사범대학과 사범계학과를 졸업한 자와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829호, 1991. 4. 26)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 계산통계학과(계산학 전공), 식물학과, 동물학과 및 항공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대학원 계산통계학과(전산과학 전공),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및 항공우주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 석사과정 협동과정(분자생물학 전공) 및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보건관리학 전공, 인구학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석사과정 협동과정(유전공학 전공) 및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 전공, 인구학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32호, 1991. 5. 15)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과 및 동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및 분자생물학과에 각각 재적하되 1993학년도까지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각각 식물학과 및 동물학과에 재적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전에 식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서 1992년 2월까지 학사과정을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식물학과에 재적한다.

③(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공과대학 항공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66호, 1992. 4. 20)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 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농과대학 및 농과대학 임학과·축산학과·임산가공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동물자원학과·임산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 조선공학과·임학과·축산학과 및 임산가공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산림자원학과·동물자원학과 및 임산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87호, 1992. 8. 27)

이 학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1호, 1993. 4. 21)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 제1항 별표 1 및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공과대학 섬유고분자공학부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응용곤충전공 및 식물병리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 섬유공학과, 농생물학과 응용곤충전공 및 식물병리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대학원 섬유고분자공학과, 농생물학과 곤충학전공 및 식물병리학전공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 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910호, 1993. 8.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12호, 1993. 8. 31)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재입학 지원기한에 대한 예외) 경제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자(학사과정)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학년도 제2학기부터 1995학년도 제1학기까지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923호, 1993. 12. 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5호, 1993. 12. 27)

이 학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32호, 1994. 4.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 제1항 별표 1 및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954호, 1995. 2.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6호, 1995. 10. 10)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 제1항 별표 1 및 제16조 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91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및 제어계측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1995학년도 이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③(동전) 1993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해양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6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7학년도 이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해양학과 또는 지질·해양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④(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5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6학년도 이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대학원 경제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⑤(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계산통계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7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8학년도 이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또는 수학·계산통계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⑥(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7학

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8학년도 이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또는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본다.

⑦(동전) 1994학년도 이전에 다음의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7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8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 또는 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는 “경제학부”로
2.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으로
4.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는 “공업화학·섬유고분자·화학공학과군”으로

부 칙 (제1003호, 1996. 4. 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014호, 1996. 7. 16)

①(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50조 제3항, 제53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53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63조는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동전) 이 학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까지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18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 계산통계학과와 전산과학전공 및 통계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대학원 전산과학과 및 통계학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028호, 1996. 12. 24)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049호, 1997. 5. 30)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에 입학한 학생중 1997년 2월 28일 현재 4개학기 이하 수료자는 생활과학대학 각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1997년 2월 28일 현재 5개학기 이상 수료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997년 2월 28 현재 5개학기 이상 수료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생활과학대학 각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③(동전) 1996학년도 이전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1997학년도 2월 28일 현재 4개학기 이하 수료자는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또는 아동가족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1997학년도 2월 28일 현재 5개학기 이상 수료자는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997년 2월 28일 현재 5개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비자학과 또는 아동가족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동전)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농가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학전공, 소비자아동학과 아동가족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농가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농가정학과로 수료한다.

⑤(동전) 1995학년도 이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1997년 2월 28일 현재 사법학과와 공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그 소속을 유지하며,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1997년 2월 28일 현재 사법학과와 공법학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과 1996학년도 입학생은 1997학년도부터 법과대학 법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⑥(동전) 1995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토목공학 전공, 도시공학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1998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1999학년도 이후부터는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1996학년도에 도시·자원·토목공학과군에 입학한 학생은 1997학년도부터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⑦(동전) 1996학년도 이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다음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가. “농학과”와 “원예학과”는 “식물생산과학부”로

나. “농공학과(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와 “임산공학과”, “천연섬유학과”는 “생물자원공학부”로

다. “농화학과”와 “농생물학과”는 “응용생물화학부”로

라. “농경제학과”와 “농업교육과(농촌사회교육전공)”은 “농경제사회학부”로

⑧(동전) 이 학칙 적용전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및 가정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및 생활과학대학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학칙 적용전에 대학원 신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수료자로 본다.

부 칙 (제1059호, 1997. 6. 24)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44조 제1항은 1997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106조와 제108조내지 제110조는 199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072호, 1997. 10. 18)

이 변경 학칙은 199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7호, 1998. 3. 1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학기간에 대한 특례)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적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학기간을 1999학년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104호, 1998. 9.10)

-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 제53조, 제60조, 제60조의 2,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 2 조 (학과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수의과대학 재적생으로 보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3 조 (학부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1995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각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8학년도 까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 학과 또는 자연과학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자연과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1995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각 학과군(수학·계산통계학과군,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 지질해양학과군)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1998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1996학년도 이후 자연과학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이 학칙 시행 전에 공과대학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기계항공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이 학칙 시행 전에 공과대학 공업화학·섬유고분자·화학공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응용화학부 또는 섬유고분자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⑤1997학년도 이전에 미술대학 공예과,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한 학생은 2000학년도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생으로 보며, 2001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⑥이 학칙 시행 전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비자아동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⑦이 학칙 시행 전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소비자아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2000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비자아동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제 4 조 (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 소비자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아동가족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112호, 1999. 1. 12)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③(동전) 제85조와 제86조2의 개정규정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26호, 1999. 5. 25)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류·식품영양학과군 입학 학생의 학과소속) 생활과학대학 의류·식품영양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수료 후 소속대학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류학과 또는 식품영양학과에 재적한다.

- ③(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석사과정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과 대학원 박사과정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학과(전공)에 재적한다.
- ④(동전) 1998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공예과 및 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2000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 ⑤(동전) 1998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약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129호, 1999. 7. 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9호, 1999. 11.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7호, 2000. 2. 3)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별표1,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기초과학계 전산과학전공(교과과정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199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계열, 학군, 학부, 전공) 및 1999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기초과학계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전산과학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00학년도부터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동전) 이 학칙 개정당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④(동전) 이 학칙 개정당시 공과대학 섬유고분자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00학년도부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⑤(동전) 이 학칙 개정당시 대학원 다음의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00학년도부터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대학원 수학과는 수리과학부로
  2. 대학원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로
  3. 대학원 전문학과, 대기과학과, 지질과학과, 해양학과는 지구환경과학부로
  4. 대학원 물리학과는 물리학부로
  5. 대학원 화학과는 화학부로
  6. 대학원 석사과정 재료공학부, 섬유고분자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대학원 박사과정 금속공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7. 대학원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및 전산과학과는 전기·컴퓨터공학부로
  8. 대학원 석사과정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로 대학원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기계



- 설계학과,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로  
 9. 대학원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10. 대학원 동물자원공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기초농생물학전공), 농생물학과(식물병리학전공), 농생물학과(곤충학전공), 식품공학과는 농생명공학부로  
 11. 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인간생명과학부로  
 ⑥(동전) 이 학칙 개정당시 대학원 과학교육과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생물전공은 생명과학부로, 지구과학전공은 지구환경과학부로, 물리전공은 물리학부로, 화학전공은 화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169호, 2001. 2. 1)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칙 제85조 제2항은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학칙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1999학년도, 2000학년도 입학한 자 중 2000학년도 제1학기까지 발급된 학사경고 중 성적 평균평점 1.7 이상인 경우 제 86조의 2에 의하여 학사제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사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단, 본문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2000학년도 제1학기까지 3회 미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는 면제하고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동전) 학칙 제86조의2 제3항의 유급제명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⑤(학과명칭 변경) 농업교육과의 학과명칭 변경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후 재적생은 농산업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⑥(전공명칭 변경) 보건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변경된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197호, 2001. 8. 31)

-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학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조기졸업을 지망하여 승인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4 이상인 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이 학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은 2001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부속시설에 소속된 교수는 2001학년도 말까지 이 학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대학(원)의 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하며 별표4, 별표5의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국제지역원은 소속교수의 소속변경 후 그 기관의 성격과 주관대학을 결정한다.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중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에서 인용된 종전의 학칙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부 칙 (제1228호, 2002. 2. 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1호, 2002. 6.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2호, 2002. 10.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8호, 2003. 1.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6호, 2003. 2. 25)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2, 3은 2003. 3. 1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협동과정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협동과정 천연물과학전공의 2002학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약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학칙 개정 당시 협동과정 통상협상전공·국제협력전공·지역연구전공·한국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동과정 통상협상전공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통상전공으로
2. 협동과정 국제협력전공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협력전공으로
3. 협동과정 지역연구전공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학전공으로
4. 협동과정 한국학전공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으로

부 칙 (제1380호, 2003. 6. 11)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2003. 2. 25 개정학칙에 따라 2003학년도까지 자연과학대학 재적생 중 전공 배정을 받았거나, 향후 전공배정을 받을 경우 수학전공은 수리과학부로, 통계학전공은 통계학과로, 화학전공은 화학부로, 물리학전공은 물리학부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부로, 천문학·대기과학·지구시스템과학·해양학전공은 지구환경과학부 소속으로 한다. 다만,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 당시에 정한 모집단위에 속한다.

②제52조(대학원과정의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범위), 제54조(편입학)제2항 및 제55조(정원의 입학)의 시행시기는 2004학년도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04호, 2003. 8. 23)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평의원 임기제한 등)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평의원회의 의원은 그 2분의 1을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 1년으로 정하여 선출 또는 위촉한다.

부 칙 (제1408호, 2004. 1. 16)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별표1”, 제14조 제1항 “별표2” 및 제15조 제1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와 생물자원공학부(임산공학전공·교과과정상전공) 재적생은 산림과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다음의 학과에 재적 중인 재적생은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1. 대학원 농학과는 식물생산과학부 농학전공으로
2. 대학원 원예학과는 식물생산과학부 원예학전공으로
3. 대학원 농공학과 농업토목전공은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으로
4. 대학원 농공학과 농업기계전공은 생물자원공학부 농업기계전공으로
5. 대학원 천연섬유학과는 생물자원공학부 천연섬유학전공으로
6. 대학원 산림자원학과는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으로
7. 대학원 임산공학과는 산림과학부 임산공학전공으로

부 칙 (제1420호, 2004. 2. 24)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19조제2항 별표4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과대학이 승계한다.

부 칙 (제1434호, 2004. 5.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5호, 2004. 8.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0호, 2004. 10.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7호, 2004. 11.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0호, 2005. 1. 1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8조제3항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및 별표 5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납입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은 이 학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납기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75호, 2005. 2. 28)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재적생은 화학생물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이 학칙 개정 당시 농업생명과학대학 다음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 1. 생물자원공학부 농업기계전공(교과과정상전공), 천연섬유학전공(교과과정상전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로
- 2.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교과과정상전공), 조경학과는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로
- 3. 식품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로

③2004학년도 이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그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식물생산과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2004학년도 이전에 농업생명과학대학 입학생으로서 전공(교과과정상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전공(교과과정상전공)으로 배정받은 후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⑤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응용화학부 재적생은 화학생물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⑥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다음의 학과(부)와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 1. 대학원 식물생산과학부 농학전공, 원예학전공은 식물생산과학부로
- 2. 대학원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임산공학전공은 산림과학부로
- 3. 대학원 생물자원공학부 농업기계전공, 천연섬유학전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로
- 4. 대학원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 생태조경학과는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로

부 칙 (제1496호, 2005. 8.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7호, 2005. 11.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9호, 2005. 1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2호, 2006. 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6호, 2006. 2. 27)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에 협동과정 경영교육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그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경영학과 또는 교육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529호, 2006. 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5호, 2006. 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3호, 2006. 3. 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6호, 2006. 4. 12)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천문학전공재적생과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천문학전공을 배정 받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물리·천문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입학생 중 천문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물리·천문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이 학칙 개정 당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재적생은 물리학부 소속으로 보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물리·천문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의 천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물리·천문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⑤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물리학부 재적생은 물리학부 소속으로 보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물리·천문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562호, 2006. 6.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64호, 2006. 8.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3호, 2006. 8.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5호, 2006. 10.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3호, 2007. 2. 8.)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별표2” 및 제15조 제1항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또는 에너지시스템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원자핵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협동과정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협동과정 의용생체 공학전공과 생물화학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과 기술경영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대학별 설치 학과(부) · 전공

단과대학	설치학과(부) · 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의예과, 수의예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법과대학	법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이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과(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국악과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 「 」 표의 치과대학과 치의학과는 치과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의 졸업시까지 존치

[별표 2]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2007학년도 입학정원
인 문 대 학	인 문 계 열 1	153
	인 문 계 열 2	115
사 회 과 학 대 학	사 회 과 학 계 열	300
	인 류 · 지 리 학 과 군	44
자 연 과 학 대 학	수 리 과 학 부 · 통 계 학 과 군	59
	물 리 · 천 문 학 부	54
	화 학 부	39
	생 명 과 학 부	52
	지 구 환 경 과 학 부	36
간 호 대 학		63
경 영 대 학		130
공 과 대 학	기 계 항 공 공 학 부	152
	재 료 공 학 부	88
	전 기 공 학 부 · 컴 퓨 터 공 학 부 군	211
	지 구 환 경 시 스템 공 학 부	80
	화 학 생 물 공 학 부	88
	건 축 학 과 건 축 학 전 공	26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공 학 계 열	135
	농 경 제 사 회 학 부	42
	식 물 생 산 · 산 림 과 학 부 군	101
	농 생 명 공 학 계 열	80
	바 이 오 시 스템 · 조 경 학 계 열	73
미 술 대 학	디 자 인 학 부	102
	동 양 화 과	
	서 양 화 과	
	조 소 과	
법 과 대 학		205
사 범 대 학	교 육 학 · 국 민 윤 리 교 육 과 군	30
	국 어 교 육 과	25
	외 국 어 교 육 계 열	55
	사 회 교 육 계 열	54
	수 학 교 육 과	26
	과 학 교 육 계 열	84
생 활 과 학 대 학	체 육 교 육 과	38
	소 비 자 아 동 학 부	47
	의 류 · 식 품 영 양 학 과 군	60
약 학 대 학		63
음 악 대 학	작 곡 과	145
	성 악 과	
	기 악 과	
	국 악 과	
의 예 과		67
수 의 예 과		40
소 계		3,162
의 학 과		135
수 의 학 과		40
소 계		175
합 계		3,337

※ 의학과, 수의학과 입학정원은 2005학년도 의예과, 수의예과 입학정원임.



[별표 3]

대학원과정의 학과(부) · 전공 및 2007학년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서울대학교	총 계	3,252	총 계	1,327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5계열 71학과(부) 27협동과정)	2,643	박사학위과정(5계열 72학과(부) 26협동과정)	1,322
	<b>인문사회계</b> (35학과(부) 15전공)	703	<b>인문사회계</b> (37학과(부) 10전공)	292
	국 어 국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불 어 불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노 어 노 문 학 과 서 어 서 문 학 과 언 어 학 과 국 사 학 과 동 양 사 학 과 서 양 사 학 과 철 학 과 ( 동 양 철 학 전 공 ) ( 서 양 철 학 전 공 ) 고 고 미 술 사 학 과 ( 고 고 학 전 공 ) ( 미 술 사 학 전 공 ) 중 교 학 과 미 학 과 교 육 학 과 ( 교 육 학 전 공 ) ( 교 육 공 학 전 공 ) ( 교 육 상 단 전 공 ) ( 교 육 행 정 전 공 ) ( 평 생 교 육 전 공 ) 국 어 교 육 과 외 국 어 교 육 과 ( 영 어 전 공 ) ( 독 어 전 공 ) ( 불 어 전 공 ) 사 회 교 육 과 ( 일 반 사 회 전 공 ) ( 역 사 전 공 ) ( 지 리 전 공 ) 국 민 윤 리 교 육 과 체 육 교 육 과 법 학 과 정 치 학 과 외 교 학 과 경 제 학 부 경 영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불 어 불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노 어 노 문 학 과 서 어 서 문 학 과 언 어 학 과 국 사 학 과 동 양 사 학 과 서 양 사 학 과 철 학 과 ( 동 양 철 학 전 공 ) ( 서 양 철 학 전 공 ) 고 고 미 술 사 학 과 ( 고 고 학 전 공 ) ( 미 술 사 학 전 공 ) 중 교 학 과 미 학 과 교 육 학 과 국 어 교 육 과 외 국 어 교 육 과 ( 영 어 전 공 ) ( 독 어 전 공 ) ( 불 어 전 공 ) 사 회 교 육 과 ( 일 반 사 회 전 공 ) ( 역 사 전 공 ) ( 지 리 전 공 ) 국 민 윤 리 교 육 과 체 육 교 육 과 법 학 과 정 치 학 과 외 교 학 과 경 제 학 부 경 영 학 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5계열 71학과(부) 27협동과정)	2,643	박사학위과정(5계열 72학과(부) 26협동과정)	1,322
	농 경 계 사 회 학 부 사 회 학 과 인 류 학 과 심 리 학 과 지 리 학 과 사 회 복 지 학 과 언 론 정 보 학 과 소 비 자 학 과 아 동 가 족 학 과		농 경 계 사 회 학 부 사 회 학 과 인 류 학 과 심 리 학 과 지 리 학 과 사 회 복 지 학 과 언 론 정 보 학 과 소 비 자 학 과 아 동 가 족 학 과 행 정 학 과 환 경 계 획 학 과	
	<b>자연과학계</b> (19학과(부) 4전공)	687	<b>자연과학계</b> (20학과(부) 4전공)	341
	수 리 과 학 부 통 계 학 과 물 리 · 천 문 학 부 화 학 부 생 명 과 학 부 지 구 환 경 과 학 부 수 학 교 육 과 과 학 교 육 과 ( 물 리 전 공 ) ( 화 학 전 공 ) ( 생 물 전 공 ) ( 지 구 과 학 전 공 ) 식 물 생 산 과 학 부 산 립 과 학 부 농 생 명 공 학 부 바 이 오 시 스템 · 소 재 학 부 생 태 조 경 · 지 역 시 스템 공 학 부 농 산 업 교 육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의 류 학 과 간 호 학 과 약 학 과 제 약 학 과		수 리 과 학 부 통 계 학 과 물 리 · 천 문 학 부 화 학 부 생 명 과 학 부 지 구 환 경 과 학 부 수 학 교 육 과 과 학 교 육 과 ( 물 리 전 공 ) ( 화 학 전 공 ) ( 생 물 전 공 ) ( 지 구 과 학 전 공 ) 식 물 생 산 과 학 부 산 립 과 학 부 농 생 명 공 학 부 바 이 오 시 스템 · 소 재 학 부 생 태 조 경 · 지 역 시 스템 공 학 부* 농 산 업 교 육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의 류 학 과 간 호 학 과 약 학 과 제 약 학 과 보 건 학 과	
	<b>공학계</b> (9학과(부))	703	<b>공학계</b> (9학과(부))	324
	건 설 환 경 공 학 부 기 계 항 공 공 학 부 에 너 지 시 스템 공 학 부 재 료 공 학 부 전 기 · 컴 퓨 터 공 학 부 화 학 생 물 공 학 부 축 측 학 과 산 업 공 학 과 조 선 해 양 공 학 과		건 설 환 경 공 학 부 기 계 항 공 공 학 부 에 너 지 시 스템 공 학 부 재 료 공 학 부 전 기 · 컴 퓨 터 공 학 부 화 학 생 물 공 학 부 축 측 학 과 산 업 공 학 과 조 선 해 양 공 학 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p><b>예·체능계 (5학과(부))</b></p> <p>음악과 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p>	100	<p><b>예·체능계 (3학과(부))</b></p> <p>음악과 미술학과 디자인학부</p>	29
	<p><b>의학계(3학과)</b></p> <p>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p>	257	<p><b>의학계(3학과)</b></p> <p>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p>	221
	<p><b>협동과정(27전공)</b></p> <p>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기록관리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여성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계산과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자동차공학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인수공통동물질병학전공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p>	193	<p><b>협동과정(26전공)</b></p> <p>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여성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계산과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자동차공학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 종양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음악학전공 (서양음악학) (한국음악학) 조경학전공</p>	115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b>전문대학원</b>	<b>6개 전문대학원 (8학과 8전공)</b>	609	<b>1개 전문대학원 (1학과)</b>	5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보건정책관리학전공) 환경보건학과	102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149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93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국제지역학전공) (한국학전공)	75	국제학과	5
치의학원	치의학	90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100		

※ 대학원 박사과정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교과과정상 전공으로 지역시스템공학전공만 운영

※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물리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원자핵공학과, 협동과정 의용생체공학전공, 생물화학공학전공, 기술정책전공, 기술경영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학과(부) 및 전공 존치

[별표 4]

<개정 2002. 10. 25, 2003. 1. 1, 2003. 2. 25, 2003. 6. 11, 2004. 2. 24, 2004. 11. 19, 2005. 2. 28, 2006. 4. 12, 2006. 8. 3, 2006. 10. 4, 2007. 2. 8>

연구시설

주관기관	연구시설	내부조직
본부 (1개)	통일연구소	부소장, 통일연구실, 과제관리실, 자료관리·출판실, 대외협력실, 행정실
인문대학 (5개)	인문학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동아시아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 한국문학연구소, 중국어문학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 언어연구소, 한국어연구소, 언어연구부, 문학연구부, 역사연구부, 철학연구부, 문화연구부, 행정실
	미국학연구소	연구부, 행정실
	인지과학연구소	연구1부, 연구2부, 전산실, 편집실, 자료실, 행정실
	철학사상연구소	연구기획부, 편집간행부, 행정지원부, 철학문헌정보센터, 철학교육연구센터
	역사연구소	국제사연구부, 비교사연구부, 역사이론 및 교육연구부, 행정실
사회과학대학 (8개)	사회과학연구원	부원장, 세계경제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중국연구소, 연구조정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경제연구소	연구부, 발간부, 자료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행정실
	언론정보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학술정보센터, 정보문화연구센터, 행정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부, 자료도서관
	심리과학연구소	제1연구부, 제2연구부, 심리봉사부, 자료부, 행정실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분석연구부, 사회발전연구부, 사회정책연구부, 문화및여성문제연구부, 행정실
	국토문제연구소	연구부, 편찬부, 지도부, 행정실
여성연구소	연구부, 행정실	
자연과학대학 (7개)	기초과학연구원	부원장, 통계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기초과학학술정보센터, 과학문화연구센터, 연구지원실, 문헌정보지원실, 행정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연구부, 교육부, 국제부, 기획부, 행정실, KOREA바이오허브센터, 특수생명자원센터, 바이오공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연구부, 기획부, 공동기기부, 학술부,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행정실
	해양연구소	기초해양학연구부, 응용해양학연구부, 대외협력부, 행정실
	이론물리학연구소	연구부, 연구지원부, 특수사업부
	미생물연구소	미생물자원센터, 유전체센터, 공동기기센터, 생물정보학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연구지원실
수학연구소	순수수학연구부, 응용수학연구부, 고등수학교육센터, 정보보호 및 암호연구센터, 전산실, 자료실, 행정실	
간호대학 (1개)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기초이론개발연구부, 간호중재연구부, 간호정책·정보연구부, 학술부, 출판홍보부, 연구지원부, 대학간호센터

경영대학 (4개)	경 영 연 구 소	조사연구부, 경영지도부, 경영문헌자료부, 국제경영연구센터, 마케팅연구센터, 회계학연구센터, 정보통신경영연구센터, 경영사례연구센터, 공기업연구센터, 행정실
	노 사 관 계 연 구 소	연구부, 조사부, 행정실
	경 영 정 보 연 구 소	연구부, 정보센터, 행정실
	증 권 · 금 융 연 구 소	연구부, 자료센터, 실무연구회, 행정실
공과대학 (13개)	반 도 체 공 동 연 구 소	운영부, 연구부, 교육부, 디스플레이연구센터, 마이크로시스템기술센터, 내장형시스템연구센터
	공 학 연 구 소	기획부, 기초공학연구부, 응용공학연구부, 기술정책연구부, 공학교육연구센터,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건축건설기술개발연구센터, 시멘트 및 콘크리트연구센터, 생물화학공학연구센터, 레이저계측기술연구센터, 신기술창업네트워크센터,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교량신기술연구센터, 지반환경연구센터, 빗물이용연구센터, 도시연구센터, 공간정보연구센터, 신공간환경기술연구센터, 세라믹수동소자연구센터, 행정실
	신 소 재 공 동 연 구 소	운영부, 산학협력부, 연구지원부, 산학기술센터, 철강연구센터, 마그네슘기술혁신연구센터, 재료미세조직연구단, 근접장이용극한광기술연구단
	자 동 화 시 스템 공 동 연 구 소	신기술연구부, 산업응용연구부, 운영부
	컴 퓨 터 연 구 소	운영부, 연구기획부, 산학연구부, 학술연구부, 컴퓨터설계연구센터, 컴퓨터네트워크연구센터,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센터, 바이오정보기술연구센터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운영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마이크로/나노기계시스템연구부, 바이오기계기술연구부, 스포츠공학연구부, 연료전지시스템연구부, 에너지/환경연구부, 지능형기계시스템연구부, 초정밀기계설계연구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운영기획부, 통신시스템연구부, 통신망연구부, 신호처리연구부, 마이크로파연구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자원개발 연구부, 환경기술 연구부, 신에너지개발 연구부, 사회기반기술연구부, 운영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운영부, 선박기술연구부, 해양개발기술연구부, 생산시스템연구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운영부, 공정개발연구부, 화학소재연구부, 특수공정기술연구부, 공정시스템연구부, 에너지·환경연구부, 화학공정기술인력양성센터, 화학공정정보센터, 화학공정안전센터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항공기술연구부, 우주기술연구부, 생산기술연구부, 항공교통운항연구부, 항공안전연구부, 운영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제1연구소, 제2연구소, 제3연구소, 제4연구소, 제5연구소, 제6연구소, 제7연구소, 교육개발실, 산학협력실, 국제협력실, 행정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운영관리부, 건축도시설계연구부, 환경기술연구부, 친환경수자원 및해안연구부, 구조안전연구부, 지반및지반환경연구부, 차세대교통기술연구부, 건설신재료연구부, 건설관리연구부, 건설정책및기술이전센터,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동아시아교류개발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농업생명 과학대학 (2개)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 농업생산·가공기술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 농업생명과학정보연구소, 농업과학기술센터, 연구기획지원실, 행정실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연구지원부, 학술연구부, 산학협동연구부 및 생물신소재분석기기센터
미술대학 (1개)	조 형 연 구 소	부소장, 연구부, 교육부, 행정실

법과대학 (1개)	법 학 연 구 소	연구부, 간행부, 법률자문실,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법의지배센터, 공익산업법센터, 행정실
사범대학 (4개)	교 육 종 합 연 구 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과학영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센터, 특수교육연구소, 연구조정실, 행정실
	교 육 연 구 소	부소장, 연구개발부, 국제협력부, 교육사업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한국교육사고, 행정실
	스 포 츠 과 학 연 구 소	연구부, 연수부, 지도부, 스포츠건강연구센터,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스포츠정책연구센터, 스포츠교육연구센터, 경기력향상연구센터, 생활체육 지도자연수원
	국 어 교 육 연 구 소	기획관리부, 연구개발부, 정보화연구부
생활과학대학 (1개)	생 활 과 학 연 구 소	부소장, 연구부, 생활상담교육센터, 생활상품개발센터, 중앙기기실, 정보실, 행정실
수의과대학 (1개)	수 의 과 학 연 구 소	부소장, 기획연구부, 행정실
약학대학 (2개)	종 합 약 학 연 구 소	부소장, 기초약학연구부, 의약품개발연구부, 의약품안전성 및 효능연구부, 환경위생연구부, 산업지원부, 중앙기기실, 실험동물센터, 제약공장, 행정실
	천 연 물 과 학 연 구 소	천연물화학연구부, 생물활성연구부, 자원개발연구부, 산업기술연구부, 자원식물시험장 및 기기관리실, 방사선동위원소실, 실험동물관리실, 천연물문헌정보실, 행정실
음악대학 (3개)	동 양 음 악 연 구 소	기획행사부, 연구자료부, 편집부
	서 양 음 악 연 구 소	작곡부, 연주부, 음악학부, 행정실
	오 페 라 연 구 소	연구부, 연수부, 자료부, 공연부
의과대학 (4개)	의 학 연 구 원	부원장, 인구의학연구소, 감염병연구소, 폐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의용생체공학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심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유전자이식연구소,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원자력 영향·역학연구소, 인간행동의학연구소, 류마티스연구소, 피부과학연구소, 보완대체의학연구소, 인간유전체연구소, 연구기획부, 연구지원부, 행정실
	암 연 구 소	연구부, 기획부, 교육부, 학술부, 연구지원부, 행정실
	간 연 구 소	간부, 위장관부, 담췌부, 행정실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부소장, 생명·자연과학연구부, 역학·정보연구부, 의과학연구부, 인문사회연구부, 공학·산업연구부, 사회정책연구부, 연구지원부, 행정실
보건대학원 (1개)	보 건 환 경 연 구 소	부소장, 보건관리부, 보건정보개발부, 환경보건부
행정대학원 (2개)	한 국 행 정 연 구 소	지방자치연구센터, 공공기업연구센터, 투명성연구센터, 행정관리연구부, 통일정책연구부, 행정실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부, 교육지원부, 행정자료부, 지방정보연구부, 운영부
환경대학원 (1개)	환 경 계 획 연 구 소	부소장, 환경계획연구부, 환경설계연구부, 환경관리연구부, 자료실, 행정실
국제대학원 (2개)	국 제 학 연 구 소	연구지원부, 국제통상·금융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미주연구센터, E.U.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한국학센터, 행정실
	일 본 연 구 소	연구부, 학술교류부, 편집간행부, 자료실, 행정실
치의학대학원 (1개)	치 학 연 구 소	부소장, 생체재료연구부, 구강악안면재건줄기세포연구부, 경조직생물학 연구부, 줄기세포조직공학연구부, 타액 및 바이오필름연구부, 연구지원부, 행정실
계	65개	

[별표 5]

<개정 2002. 10. 25, 2003. 1. 1, 2003. 2. 25, 2004. 2. 24, 2004. 8. 3, 2005. 1. 13, 2005. 2. 28, 2006. 4. 12, 2006. 8. 3, 2006. 10. 4, 2007. 2. 8>

부 속 시 설

소 속	부 속 시 설 명	내 부 조 직
본부직할 (14개)	박 물 관	고고역사부, 전통미술부, 인류민속부, 현대미술부, 자연사부, 행정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원장, 정보자료관리부, 기반연구부, 기획연구부, 편집간행부, 교육·교류부, 행정실
	학 생 기 숙 사	부사감, 관악사, 국제회관, 합춘사, 연건사
	보 건 진 료 소	환경위생부, 건강관리부, 진료부, 검사부, 약국, 행정실, 연건보소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학습지원부, 교육매체지원부, 글쓰기교실, 행정실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동물실험관리부, 실험동물사육부, 형질전환동물센터
	기초과학공동기기원	기획관리부, 연구지원부, 교육지원부, 기기지원부, 정전기속기연구센터, 행정실
	언 어 교 육 원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 행정실
	대 학 생 활 문 화 원	학생상담센터, 진로·취업센터, 연구조사부, 문화사업부, 리더쉽개발부, 행정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기 록 관	기록물관리부, 행정실
	환 경 안 전 원	안전관리부, 운영부, 방사선부, 교육연구부, 행정실
	미 술 관	학예실, 행정실
	경 력 개 발 센 터	진로상담부, 취업지원부, 진로정보부, 행정실
공과대학 (1개)	연 구 지 원 소	정보지원실, 연구지원실
농업생명과학대학 (7개)	농 장	기초연구부, 작물연구부, 원예연구부, 행정실
	학 술 립	연구부, 행정실, 남부학술림, 대화산학술림, 칠보산학술림
	실 험 목 장	기초연구부, 응용연구부, 행정실
	수 목 원	연구부, 식물표본관,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행정실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기획관리부, 기기·교육지원부, 행정실
	부설중등교육연수원	교육과정운영부, 행정실
식 물 병 원	기초진단부, 임상병리부, 식물해충부, 수목관리부, 환경생리부, 입원치료실, 행정지원실	
사범대학 (2개)	부설교육행정연수원	교육과정운영부, 정책연구개발부, 교육정보화부, 행정실
	부설중등교육연수원	부원장, 교육과정운영부, 행정실
생활과학대학(1개)	어 린 이 집	부원장, 보육부, 행정실
수의과대학(1개)	동 물 병 원	부원장, 진료부, 진단부, 교육연수부, 원무실
약학대학 (2개)	약 초 원	재배부, 표본부, 연구부
	약 학 교 육 연 수 원	부원장, 연수교육부, 연구부, 자료부, 행정실
의과대학(1개)	의 학 교 육 연 수 원	부원장, 연수부, 연구개발부, 기획부, 자원부, 행정실
보건대학원(1개)	보 건 사 업 소	제1부, 제2부, 행정실
치의학대학원(1개)	치 의 학 교 육 연 수 원	연수교육부, 연구개발부, 정보관리부, 행정실
계	31개	



별지서식 (1)

계 호

졸 업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 학과( 전공  
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서울대○○(학)○○○○

별지서식(1의 2)

제	호				
<b>졸업증서</b>					
					성명
					년 월 일
<p>위 사람은 본교 ○ ○ 대학 ○ ○ 학부·학과(                    전공)와 △ △ 대학 △ △ 학부·학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 ○ 학사 및 △ △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p>					
					년 월 일
서울대학교 ○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서울대학교 △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서울대○○ (학) ○○○○					

별지서식 (2)

## 연구 실적 증명서

현주소

(학위)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대학(원)    학과(    연구소)의 연수연구원으로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연구분야  
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연구소)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